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화숙, 오현정, 이동현,
김제리, 권영희, 홍성룡, 양민규,
박순규, 전병주, 이정인, 한기영,
최웅식, 권수정, 임종국, 성흠제,
김인호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일자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 될 것임.
- 그러나 노인 일자리 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비해 전담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으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이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적절한 처우와 근로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시장의 책무)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 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